

제2994호
2023.4.26.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전화 : 3396-4957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3-42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 고 시

제2023-28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 6

제2023-30호 :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경비현)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42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안 제4조, 제5조)
- 라.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안 제6조)
- 마. 시설물 감면규정(안 제 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 02-3396-5305, 팩스 : 02-3396-8721, email : joanne21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 구민이용 공공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이용)할 때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 감면규정)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5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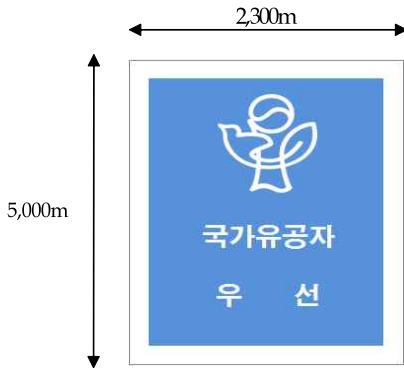
1. 규격 및 색상

가. 규격 : 바닥면 가로 2,3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700mm × 세로 600mm

나. 색 상 : 하늘색(바닥면), 흰색(글자, 문양)

2. 도안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큰나무' 심볼 삽입)

가. 바닥면 표시



나. 안내표지판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28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제2014-119호(2014.3.27.), 제2019-185호(2019.6.7.) 및 제2022-479호(2022.12.8.)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28호(2017.12.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72호(2019.6.12.), 제2020-10호(2020.2.5.) 및 제2023-1호(2023.1.4.)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24호(2019.3.13.)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10호(2023.1.18.)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51-1 일대 / 6,500.1㎡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우리자산신탁(주) 대표 이종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9년 3월 13일
-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의 요지
 - 가.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이 창 재	이 종 근

- 나. 공동주택 분양면적 확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면적 정정
 - 다. 임대주택 토지등소유자 환지 변경 : 총회의결에 따른 환지 변경
6. 관련도서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5) 비치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30호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6호(2010.08.2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7호(2021.12.16)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I.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구 입정동 273 앞대	12,316.6	-	12,316.6	-

※ 향후 측량성상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 변경

1) 정비기반시설의 부담 계획 : 변경

구역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기존 정비기반 시설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순부담률 (%)	
				계	도로	공공임대 산업시설부지	현금 환산부지	건축물 환산부지		
수표 구역	기정	13,089.8	10,336.1	510.8	2,753.7	345.9	1,634.6	773.2	-	17.83
	변경	13,089.8	10,336.1	510.8	2,753.7	345.9	1,634.6	-	773.2	17.83

※ 순부담률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기존 정비기반시설면적) / (시행면적 - 기존 정비기반시설면적)
= (2,753.7㎡ - 510.8㎡) / (13,089.8㎡ - 510.8㎡) = 17.83%

※ 시행면적 = 대지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면적 (토지기부채납 + 건축물기부채납)

2)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계획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753.7	-	2,753.7	100.0		
토지	소계	1,980.5	-	1,980.5	71.9	
	도로	345.9	-	345.9	12.6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	1,634.6	-	1,634.6	59.3	
현금	773.2	감) 773.2	-	-	환산부지면적	
건축물(공공임대산업시설)	-	증) 773.2	773.2	28.1	환산부지면적	

※ 건축규모(연면적 등) 및 건축계획은 공공기여율 및 건축심의, 인허가 절차를 통하여 최종 확정 예정

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신설

구 분	현금환산부지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73.2	감)773.2	-	0.0	-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현금 기부채납	현금기부채납(환산부지면적) : 773.2㎡ → 0㎡ 추가부담 현금납부 약 160억원 (총잔자신편가액 20,710천원/㎡ 적용)	기부채납 형태 변경 (현금-건축물)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바.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II.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97호(2021.12.16.)로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수표구역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정비계획에서 정한 공공기여 형태의 조정을 위해 (경미한)변경 결정하고자 함.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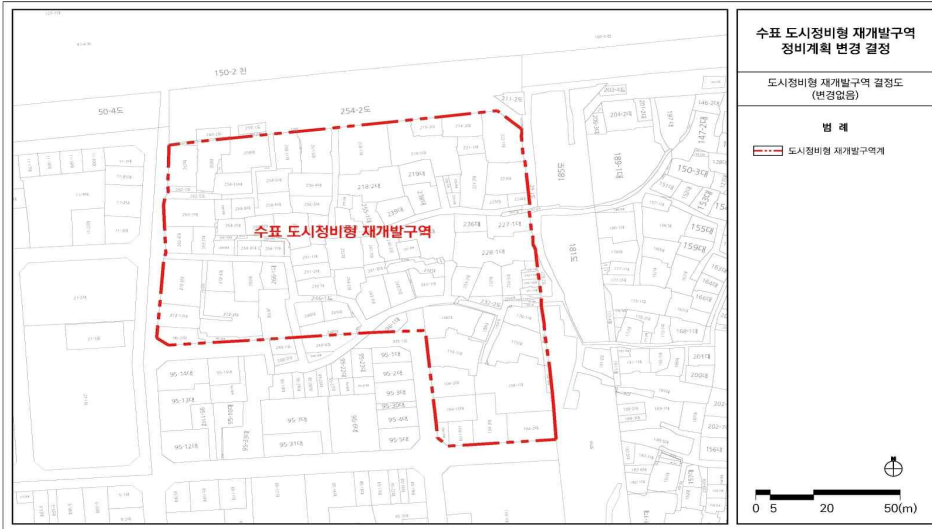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IV.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정비과(☎3396-577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 정비계획 결정도

